소식 1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-20호

「식품접객업소 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 관리 규정」 일부개정

1. 개정 이유

식품위생법 개정(25. 4. 1.)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 대상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, 위생등급제도 통합 운영을 위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 · 보완하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'식품안심업소' 등 위생등급 지정업소 명칭 정의 신설(안 제2조)

1) 음식점 위생등급 단일화에 따라 현재 위생등급 지정업소 명칭을 변경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

나. 위생등급 단일화 등 평가체계 개선(안 별표 1, 안 별표 1-1, 안 별표 1-2, 안 별표 1-3, 안 별표2)

1) 현행 위생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3개 등급(매우우수, 우수, 좋음)으로 구분하고 있음

2) 현 등급 체계는 소비자에게 등급이 낮은 업소가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혼동을 줄 수 있고, 등급에 따른 재평가 요청으로 행정적으로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어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음

3) 또한 집단급식소 확대, 편의점 등 조리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표를 세분화하고 등급 단일화 및 표지판을 변경하고자 함

다. 평가 시 보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재평가 신청 규정 폐지(안 제8조)

1) 현장 지정평가 시 건강진단 미실시 등 사유로 등급 보류 판정을 받게되면 영업자가 다시 재신청하여 평가까지 상당기간 소요됨

2) 보완이 가능한 항목임에도 다시 신청해야하는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보완 규정을 마련함

3.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식품위생법 제47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(1)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(규제심사 비대상, 26. 1. 28.)

(2) 행정예고(공고 제2026-047호, 26. 1. 28.)

소식 2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-21호

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

1. 개정 이유

식품 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과 기준 · 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 등을 신설 ·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, 냉동식품 보조용도로 함께 냉동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기준 ·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 ·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[안 제2. 4. 3) (3)]

1) 식품은 정해진 보존조건을 준수해야 하나, 제품의 특성에 따라 보존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
2) 냉동식품 보조용으로 사용되어 함께 냉동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, 건조농산물도 냉동보관 할 수 있도록 개선
3) 제품 특성을 고려한 보존 · 유통기준 개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

나.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[별표 4]

1) 「농약관리법」에 따른 등록(예정)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· 개정 및 사료, 토양, 용수 등을 통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농약 성분 관리 필요
2) 메타미트론 등 113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
3) 농산물 및 축 · 수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

다.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

1) 시료 추출액 채취무게, 희석배수 추가 등 일산화탄소 시험법 개정
2) 기준 · 규격 개정 등에 따른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신설 · 개정
3)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(DAS-01131-3, DP-910521-2, NS-B50027-4)에 대한 시험법 신설
4)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

3.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식품위생법」제7조제1항 및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제4조제2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(1) 행정예고 : 공고 제2025-308호(2025. 7. 21. ~ 2025. 9. 22.)

(2) 식품위생심의위원회

가)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: 2025. 12. 2.
나)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: 2025. 11. 13.

(3) 규제심사

가)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: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6-1325호(2026. 3. 10.)

소식 3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-25호

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

1. 개정 이유

도축장, 집유장도 중요관리점(CCP)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의 등록 및 우대혜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생산부터 제조 및 유통까지 식품 전 주기 HACCP 디지털 관리 기반 마련으로 수기 오류 등 휴먼에러 방지와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도축장, 집유장의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절차 마련 (안 제11조의2, 제16조)

1) 중요관리점(CCP)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(이하 “자동 기록관리 시스템”) 적용업소의 등록은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업체가 등록할 수 있으나,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으로 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, 집유장도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평가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, 해당 심벌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

2)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 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도축장, 집유장 영업자는 관할 시 도지사에게 신청하고, 신청을 받은 관할 시 도지사는 현장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 적합한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

3.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식품위생법」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, 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(1)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(비대상, 2026. 2. 23.)

(2) 행정예고(공고 제2026-128호, 2026. 3. 9. ~ 2026. 3. 30.)

소식 4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-39호

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

1. 개정 이유

식품이력추적 등록 업무에 대해 영업자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등록심사 및 조사 · 평가 업무를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신규등록업소의 비대면 등록심사 개선(안 제4조제4항제4호)

1) 식품이력추적관리 신규 등록심사 업무(현장심사)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

2) 신규 등록 심사 시 현장 등록 심사 뿐만 아니라 화상통신,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등을 활용한 비대면 등록심사도 가능하도록 개선

3) 등록심사 민원처리기한 단축 등 행정 효율성 제고

나. 조사평가 시 자체조사평가 제도 도입 및 부적합 보완기한 연장(안 제5조제5항, 제5조제7항)

1) 조사 · 평가업무에 대해 영업자 편의를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

2) 조사 · 평가 시 영업자가 스스로 점검하고, 식품안전정보원이 검증하는 자체조사평가를 도입하고, 부적합 보완 기한을 1회에 한해 10일 이내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

3) 영업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 ·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영업자의 편의성 증대

3.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식품위생법」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, 「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(1)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검토(비대상, 2026. 3. 27.)

(2) 행정예고(공고 제2026-182호, 2026. 4. 10. ~ 2026. 4. 30.)

소식 5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-40호

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

1. 개정 이유

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,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하며, 기준 · 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 · 개정하여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, 새로운 식품 원료 추가 등 식품 원료 목록을 정비하여 다양한 식품이 개발 ·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[안 제5. 11. 11-3 5) (11), 제5. 11. 11-3 5) (13), 제5. 11. 11-3 5) (16)]

1)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 ·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통계적 개념을 확대 · 도입 필요
2)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황색포도상구균, 장염비브리오,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한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도입
3)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 확보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, 국민 건강보호 및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

나. 식품원료 목록 개정[안 별표 1, 별표 2, 별표 3]

1)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신규 등재하고, 명칭, 분류, 사용부위 등 식품원료 목록의 정비 필요
2) 어획량 등 식용근거가 확인된 가시진흙새우(*Argis toyamaensis*) 등 73종을 [별표 1] "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" 2. 동물성 원료에 추가
3) 국내 전래적 식용근거가 확인된 작두콩 씨앗 · 어린 꼬투리, 유자 잎, 프로폴리스를 [별표 1] 및 [별표 2] 원료 목록에 추가
4) 겹삼잎국화, 흑산내 추출물, 풀무치, 땃두릅나무 추출물을 [별표 3] "한시적 기준 · 규격에서 전환된 원료"의 목록에 등재
5) 전통발효식품 유래 미생물과 국제 공인기관에서 식용근거가 확인된 미생물을 [별표 1] 및 [별표 2] 원료 목록에 추가(5건)
6) 명칭, 분류 및 사용부위 등 식품원료 정비(264건)
7)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 목록 정비를 통해 식품원료 사용의 편의성을 증진

다.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[별표 4]

1) 「농약관리법」에 따른 등록(예정)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· 개정 및 사료, 토양, 용수 등을 통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농약 성분 관리 필요
2) 디메설파젯 등 12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

3) 농산물 및 축·수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

라.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[안 제2. 3. 8) (1), 별표 5 중 (171) 페닐부타존]

1)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 허가를 취소한 페닐부타존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목록으로 추가하고, 현행 잔류허용기준을 삭제
2)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

마.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[안 제8.]

1) 식중독균의 신속·정확한 검출을 위해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을 활용한 스크리닝 시험으로 불검출 판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,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의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신설 및 일부 시험법 명확화 등 개선
2) 세균수, 대장균, 대장균군 건조필름배지 조성을 삭제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건조필름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
3)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에서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식용란 채취량을 20개에서 40개로 확대함에 따라 식용란 살모넬라 시험법에 반영
4)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신설·개정
5) 총 아플라톡신, 벤조피렌 시험법, 루핀알칼로이드 시험법 개선
6)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의 용어 및 기술 방법 통일
7)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(MON94313)에 대한 시험법 신설
8)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

3.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식품위생법」제7조제1항 및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제4조제2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(1) 행정예고 : 공고 제2025-522호(2025. 12. 23. ~ 2026. 2. 23.)

(2) 식품·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

가)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: 2026. 4. 17.

나)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심의 : 2026. 4. 22.

다)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: 2026. 3. 20.

라)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 : 2026. 3. 19. ~ 2026. 3. 25.

마)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: 2026. 4. 6. ~ 2026. 4. 8.

(3) 규제심사

가)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: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5-5462호(2025. 12. 4.)

소식 6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-41호

「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(지역) 및 수입위생요건」 일부개정고시

1. 개정 이유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을 허용한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을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목록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품목을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동물성 식품 목록에 추가함(안 별표 제1호가목, 제2호나목, 제3호가목, 제3호나목, 제7호)

3.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제11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(1) 행정예고 : 공고 제2026-225호(2026.5.4. ~ 2026.5.24.)

(2)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: 비대상(제2026-2071호, 2026.4.15.)